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적·체계적 수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사 제도도입의 당위성

·한 상 욱 · 김 임 순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명예회장

·동남보건대학 겸임교수

환경부는 2002년도 환경정책추진계획(www.me.go.kr)에서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 신뢰성 제고방안으로 영향평가 종합 D/B 구축, 과학적 평가기반 확립과 함께 환경평가사제도 도입방침을 재차 밝힌 바 있다.

당초의 환경영향평가사제도화 추진은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사를 국가기술자격제도로 신설하여 줄 것을 노동부에 요청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다. 노동부는 산하단체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사 자격검정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의 책무와 작업내용의 분석(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 2000)을 완료하고 노동부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2002년 자격시험의 시행을 위한 부령(안)을 입법예고(노동부 2001년 9월 8일) 하였다.

이와 함께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의 시행에 관한 응시자격, 시험과목, 평가영역 등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새천년 민주당은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기획단을 2년여 동안 운영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2001년 11월 26일 이상수 의원 외 21인 발의 의안번호161227)되어 있다.

난개발이 횡행하고 부실평가에 따른 폐해가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시각이 팽배한 현실에 비취볼 때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적 체계적 수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사의 도입은 바람직하다

고 하겠다.

그러나 제도화가 추진된 지 2년이 넘도록 가시적인 성과 없이 모처럼 애써 마련된 법령개정(안)의 처리를 지체시키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모든 것이 준비된 환경영향평가사 제도도입을 더 이상 지체시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의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다. 정부는 입법부와 협력하여 환경영향평가사제도 도입을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의 실행원칙

세계 111개국 27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환경영향평가학회(IAIA)는 1999년 환경영향평가(Envri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의 정의, 목적, 원칙으로 구성된 바람직한 환경영향평가의 실행원칙을 발표하였다.

이 실행원칙에서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과 관련된 주요결정이나 방침을 실천하기에 앞서 개발계획의 시행에 따른 생물, 물리적, 사회적 또는 기타 관련 영향을 확인하고 예측하고 평가하여 완화시키는 방안을 개발계획에 내재화시켜 이의 추진여부 등의 사결정을 지원하는 도구」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 (1) 환경적인 고려가 명확히 언급되고, 개발의사결정 과정에 결합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 (2) 개발계획에서 파생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측하여 회피하고, 최소화하거나 상쇄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 (3) 자연계와 그들의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생태

적 과정의 생산성과 능력을 보호하여야 한다.

- (4) 지속가능한 자원이용 및 관리기회를 최적화하는 개발이 도모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EIA 프로젝트 관리자에 의해 검토되고 담보되도록 보장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프로젝트 관리업무의 특성

EIA 프로젝트관리(EIA Project Management)는 복잡하고 요구사항이 많을 뿐더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많은 평가자(Practitioner)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평가자가 프로젝트관리자의 역할에 적합하지 않을지라도 고립되어서 수행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평가자는 프로젝트관리의 내용과 프로젝트관리자의 역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EIA프로젝트관리의 내용과 프로젝트관리자의 역할은 개발의 제안자, 자문역, 정부기관, 발주기관과 프로젝트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된다.

EIA프로젝트관리의 주요목적은 환경을 보호하고 해당프로젝트의 경제적, 사회적 목표를 극대화하도록 계획의 수정을 도모하고 승인된 제안을 관리하는 것이다.

EIA프로젝트의 1차 목표는 성공적인 EIS의 작성이며, 중장기목표는 환경평가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환경을 실현·관리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제안이 EIA과정에서 총체적인 자연환경속으로 조화롭게 편입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EIA는 더 나은 제안서,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하고 필요한 만큼의 자원을 소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IA를 거쳐 조정된 제안서는 덜 소모적이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유발하며 환경에 해를 덜 준다. 가장 환경적으로 건전한 제안서가 보다 지속가능하고 희귀자원을 지켜주고 장래의 개발성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EIA과정에는 정당, 발주기관, 자문회사, 심사기관, 규제기관, NGO, 학계·전문가, 언론매체, 공중 등의 관심내지는 참여가 수반된다.

따라서 EIA프로젝트관리자는 이들의 요구와 필요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상충되는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EIA프로젝트관리자는 EIA프로젝트팀의 안내자로서 당해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함께 EIA 실행원칙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관리체계 구축 그리고 원만한 대인관계가 요구된다.

환경영향 평가의 실태

현재의 환경영향평가는 주로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영향평가법에 따라 일정한 인적 물적 자격요건을 갖춘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의해 수행된다. 이중 인적요건은 주로 수질, 대기질, 소음 진동, 폐기물분야의 기술사와 기사의 자격을 갖춘 자와 이들 자격에 상응하는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에 의해 충족된다.

이들 자격종목은 해당분야의 조사, 분석, 설계, 시공 등을 직무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의 원칙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환경영향평가업무는 대부분 개발사업자의 발주에 따라 경쟁을 통해 선정된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간에 용역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주자인 개발사업자의 요구사항을 따라야 할 소지의 개연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제한된 자금과 단기간에 환경영향평가가 수행됨으로써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작성되고, 통과의례식으로 협의절차를 거침으로써 환경영향 평가결과가 미흡하더라도 개발계획의 타당성이 부각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개발사업자를 비롯하여 개발계획은 인·허가하는 개발부서 및 관련지역 주민들의 책임의식의 결여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책임성의 미흡과 이를 총괄 관리하는 기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사 도입의 당위성

환경영향평가대행자가 자발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예측평가기법 등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제도 도입과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 교육훈련 그리고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정책적·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 업무는 과학적인 분석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개발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영향과 함께 환경영향을 확인하고, 예측하며, 평가하고 완화방안을 강구하여 개발계획의 추진여부 등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절차화된 사회적 도구로서 계획과정과 연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학문분야의 지식과 기술의 접목에 의한 학제적인 접근과 관련계획의 통합이 요구된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환경영향평

가의 과정전반에 대한 통찰력과 동과정에서 얻어진 결과를 종합할 수 있는 기획가와 관리자적인 자질을 갖추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단일 특정분야의 기술사와 기사 등의 자격을 갖춘 자가 환경영향평가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자격요건이 되고 있는 자격종목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자격종목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의 요구증대와 환경영향평가 범위의 확대에 의한 수요증가를 고려하여 볼 때 환경영향평가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할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제도의 도입은 당연하고 시급을 요하는 과제라 하겠다.

맺음말

환경영향평가의 직무수행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환경영향평가의 성전(Bible)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미국의 환경정책법(NEPA)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자연과학, 사회과학, 환경설계기법에 관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관련 정책과 제도가 접목된 통합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를 학제적인 접근을 요하는 프

로젝트로 간주하여 이의 수행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주도하에 종합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의 접목에 의한 계획하에 체계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계획 또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실시계획 수립 및 집행 등 계획의 전 과정에 환경적인 배려가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직무로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자에게 환경영향평가사 전문자격을 부여하고 이들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조정되고, 관리되어지고 양질의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되어 지도록 유인시책이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내실화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은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최소화시키는 출발점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가 개발의 면죄부라고 하는 오명에서 벗어나 정부의 신인도를 높이는 길이 될 것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교육의 건실화로 이어져 국가적인 환경영향평가기반의 구축을 촉진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환경기술인」을 임으면 환경보전이 발라집니다.